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중이용업에 ‘무인으로 하는 영업’ 추가〉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4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营业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营业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다중이용업에 “무인(無人)으로 하는 영업” 추가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無人)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¹⁾.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2. ~ 6.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이용하는 영업[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無人)으로 하는营业을 포함한다]----- -----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인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중이용업을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한

1) 다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독립적으로 개정안 법문을 살펴보면, 현행 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에는 영업자가 있는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도 이 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임을 명확히하는 규정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음.

이하에서는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营业을 포함”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였음.

현행	개정안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인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無人)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과 관련한 현행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하여, 다중이용업의 요건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21종 규정)²⁾.

한편 시행령에서는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음(시행규칙 제2조 각호에서 6종 규정)³⁾.

이와 같이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 이하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유는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업의 형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향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다중이용업을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 2.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7.>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현행법령은 키즈카페, PC방,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노래방 등 총 27종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수는 2024년 12월 말 현재 169,392개소인데, 이 중에는 무인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들도 있음.

<현행 다중이용업의 종류 및 현황>

구분	업소수	관계법령	소관부처
총계	169,392		
시행령	1. 휴게음식점	11,474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 일반음식점	56,189	
	3. 제과점	756	
	4. 공유주방	0	
	5. 유흥주점	25,232	
	6. 단란주점	11,378	
	7. 영화상영관	615	영화비디오법 문화체육관광부
	8. 비디오물감상실	135	
	9. 비디오물소극장	21	
	10. 복합영상물제공업	8	
	11. 학원	1,632	학원법 교육부
	12. 목욕장	1,551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13. 게임제공업	2,103	게임산업법 문화체육관광부
	14. PC방	7,770	
	15. 복합유통업	893	
	16. 노래연습장	27,543	음악산업법 문화체육관광부
	17. 산후조리원	514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18. 권총사격장	13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19. 골프연습장	8,994	체육시설법 문화체육관광부
	20. 안마시술소	264	의료법 보건복지부
	21. 고시원	10,956	관계법 없음 국세청

			(자유업종)	(사업자 등록)
	소계	168,041		
시행 규칙	1. 전화방 화상대화방	153	관계법 없음 (자유업종)	국세청 (사업자 등록)
	2. 수면방	98		
	3. 콜라텍	418		
	4. 방탈출카페	35		
	5. 만화카페	91		
	6. 키즈카페	556	관계법 없음 (자유업종)	국세청(사업자 등록)
			관광진흥법 (유기기구 사용시)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놀이기구 사용시)	행정안전부
	소계	1,351		

(자료: 소방청)

한편,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는 현행 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제8조4)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제13조의2). 또한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에 비상구 추락 위험 표지 및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데(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2⁵⁾), 특히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제9조제1항 후단).

4) 소방안전교육의 상세 내용은 [참고 1] 참조

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참조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無人)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제1호),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영위 중인 자에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3조).

최근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룸카페, 무인 세탁소, 무인 사진관 등 무인으로 영업하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무인점포의 화재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이고(2020년 4건 → 2024년 22건⁶⁾) 이에 따른 재산피해도 증가(2020년 300만원 → 2024년 1억 4,200만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6) 최근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도 증가하고 있음.

-KBS, [집중취재] 무인점포 느는데…화재 안전은 ‘사각지대’, 2025. 1. 20.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6593&ref=DA>)

- 연합뉴스, 다중이용업소 ‘피난난이도’ 평가…무인점포 화재대책 강화, 2025. 1. 11.

(출처: <https://www.yna.co.kr/view/MYH20250111001600641>)

<최근 5년간 무인점포 화재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백만원)
		사망(명)	부상(명)	
계	55	0	0	257
2020	4	0	0	3
2021	9	0	0	66
2022	7	0	0	4
2023	13	0	0	42
2024	22	0	0	142

(자료: 소방청)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모든 무인점포는 소급해서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구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다중이용업주의 수용 가능성의 정도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⁷⁾.

또한, 소방청은 최근 무인점포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화재위험평가 등을 실시하였는데⁸⁾⁹⁾, 그 결과 무인점포는 건축물 규모에 따른 소방 및

7) 예를 들면 지하층에 설치된 무인점포나 밀폐구조의 무인점포에는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소방청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비용은 1㎡당 6만원 정도 소요되고, 영업주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개보수, 장기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임차인의 경우 사후 철거 문제 등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소방청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에 걸쳐 전국 무인점포 10종 9,03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무인점포 6종 2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음.

피난시설 등 설치·관리만으로도 화재안전등급이 비교적 안전한 영업장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소방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업종별 가맹점 대표 업무협의 등을 통해 가맹점 체결 조건에 소방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영업장은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등 무인업소에 대한 자율안전 관리 체계를 추진 중임.

<소방청의 전국 주요 무인점포 조사 결과>

□ 기간: 22.12.14. ~ 23.3.14.(3개월)

□ 대상: 무인점포 10종

- (무인 다중이용업종) 노래방, 키즈카페, PC방,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 (무인 신종업종) 사진관, 세탁소, 밀키트,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 조사결과:

- 9,030개소(무인 다중업소 2,707 / 무인 신종업소 6,323)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5,100개소(56.4%), 화재 35건

무인
다중

합계 (개소)	노래방	키즈 카페	PC방	휴게 음식점	게임 제공업	화재 (건)	사용층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지하	1층	2층 ↑	
2,707	618	98	730	840	421	12	196	963	1,548	1,650(61%)

무인
신종

합계 (개소)	사진관	세탁소	밀키트	스터디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화재 (건)	사용층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지하	1층	2층 ↑	
6,323	708	1,975	662	967	2,011	23	97	5,100	1,126	3,450(55%)

(자료: 소방청)

9)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요는 [참고 3] 참조

<2023년 무인점포 등 화재위험평가 결과>

□ 기간: 23.07.27. ~ 23.12.24..(6개월)

□ 대상: 무인점포 6종 200개소

- 룸카페, 스터디카페, 사진관, 세탁소, 밀키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 평가결과:

- B등급(76.6점)으로 화재등급이 비교적 안전한 영업장으로 평가

※ 스터디카페(70.5) <룸카페(73.5) <세탁소(77.7) <아이스크림(78.9) <밀키트(79.1)
<사진관(79.9)

- (분석결과) 주로 피난층에 위치한 소규모 영업장으로 다중이용업 편입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방식에 따른 전기적(콘센트 등) 요인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대책 필요

- (종합분석)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축물 규모에 따른 소방 및 피난시설 등 설치·관리만으로도 화재안전등급이 비교적 안전한 영업장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행 영업상태 유지 및 자율안전 관리체계 추진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무인점포 등 화재안전관리 방안>

- 협의체 운영 소방청과 무인점포 가맹점 본사 간 협의체 운영
 - 영업장 신규·갱신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화재안전의무 부여 및 자율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안전체제 구축
 - (소방청↔가맹점 본사) '24.3.~5월 단기간 운영한 협의체 지속 유지(3회 협의체 회의 개최)
- 화재안전점검 : 건축물 관계자의 화재안전분야 점검(년 1회) 및 내부공사시 무인점포 관리자 및 영업주 참여(확인)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내부 인테리어시 관계자 확인 등
- 안전의식 개선 : 점포내 사고사례 공유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현장부착) 등
 -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응사항 및 비상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구축

(자료: 소방청)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업종이나 영업 형태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현행법령의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은 영업장 면적, 수용인원, 업종별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화재취약 및 위험도가 높은 업소를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인점포는 2023년 화재위험평가 결과 B등급(76.6점)으로

화재등급이 비교적 안전한 영업장으로 평가되었고 전수조사 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업종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아닌 근무자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기준으로 무인영업장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는 것은 인명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소방안전교육 개요

(자료: 소방청)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에 근거함.
- (교육대상) ① 다중이용업주, ②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교육주기)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
 -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에 1회 이상
- (교육시간 및 비용) 4시간 범위(최소 2시간 이상) / 없음
-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인명대피 유도요령,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참고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 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4. 삭제 <2014.12.23.>
5. 그 밖의 안전시설
-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나. 누전차단기
 - 다.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畫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참고 3 화재위험평가 개요

(자료 : 소방청)

- (근거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평가정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법 제2조)
- ¹• (평가주체) 법 제16조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의 기술인력
 -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중에서 입찰을 통해서 수행업체를 선정함
- (평가대상) ① 2,000m²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한 경우, ②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경우 (법 제15조제1항)

⇒ '22년 기준 총 대상 7,697개소 (①대상 200개소, ②대상 1,226개소, ③대상 6,271개소)
- ²• (평가방법) 고유위험·공간·건축물·화재이력 등을 평가 후 등급 부여
 - ※ 대행업체의 기술 인력(2~3명)이 현장 방문(1일 4~6개소)하여 평가 및 등급 부여
- ³• (평가등급) 10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구간 및 등급(A~E)으로 분류함

4. A등급 5. (80점 이상)	6. B등급 7. (60점~79점)	8. C등급 9. (40점~69점)	10. D등급 11. (20점~39점)	12. E등급 13. (20점 미만)
-----------------------	------------------------	------------------------	--------------------------	-------------------------

※ E등급인 경우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검토